

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실업문제의 해소까지는 아직 요원하여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를 1년간 연장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함.(안 부칙)
-운영기한 : 2000. 6. 30 → 2001. 6. 30

다.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3. 6 ~ 3. 27) 결과,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98년 8월 20일 제정, '99년 6월 30일 1차개정('99.6.30~2000.6.30)되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한시기구로서

○ 위원회현황을 살펴보면, 위원장 2인(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 공동위원장제)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되어 실업대책본부 및 5개 분과위원회(실업대책,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사무·전문직, 청년·여성소위원회)를 구성,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도시정보화 추진,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모

니터링 등 전체회의 21회, 소위원회 회의 35회, 모니터링 6회 개최하였으며, '98년 5개 분과 위원회에서 '99년 3개 분과 위원회(실업정책, 공공근로사업, 청년·여성위원회)로 축소 운영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수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실업문제해소까지는 아직 요원하여 실업대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0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	-----	---------------------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의 개정('99. 12. 31)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된 「제조담배도매업」에 관한 사무와 폐기물 관리법개정('99. 8. 9)에 따라 신설된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제조담배도매업」 사무를 조례로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1)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2)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관계장부, 서류의 확인, 열람, 과태료부과·징수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안 별표)

(1) 변경신고,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의 수리

(2)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 검사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사무의 위임 등)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본 개정조례안의 제조담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사무(등록, 휴·폐업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단위사무)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이나 담배사업법 개정('99. 12. 31)으로 본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되어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사무(재활용신고, 휴·폐업신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5개 단위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99. 8. 9)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기존의 폐기물에 관한 상당의 관련사무가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

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7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1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 건립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및 국·내외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수유동 122-3, 2000. 7 개관 예정)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흥동 558-1 외 11, 2000. 7 개관 예정)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마장동 798-1, 2000. 7 개관 예정)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쌍문동 19-12,